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제정	2009. 06. 24.
개정	2009. 12. 08.
개정	2011. 03. 15.
개정	2011. 08. 31.
개정	2012. 04. 17.
개정	2013. 08. 14.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02. 13.
개정	2014. 04. 02.
개정	2014. 10. 06.
개정	2015. 04. 27.
개정	2015. 05. 06.
전부개정	2016. 02. 19.
개정	2017. 02. 02.
개정	2017. 04. 04.
개정	2017. 06. 08.
개정	2018. 02. 09.
개정	2018. 06. 12.
개정	2018. 08. 06.
개정	2018. 09. 10.
개정	2019. 07. 31.
개정	2019. 10. 29.
개정	2020. 08. 11.
개정	2021. 03. 17.
개정	2021. 12. 28.
개정	2022. 05. 02.
개정	2022. 12. 28.
전부개정	2023. 03. 27.
개정	2023. 06. 15.
개정	2024. 02. 28.
타규개정	2024. 12.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따른 지원과제의 평가 및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회”란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를 위한 선정평가위원회와 결과평가위원회를 말한다.
2. “사업비조정 심의위원회”란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비 조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란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과제 결과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심의위원회”란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5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5. “위원회”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위원회 및 각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6. “추출담당부서”란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을 추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소관부서”란 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대상이 된 지원과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2 장 전문가풀

제3조(전문가풀 구성) 전담기관은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풀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02.28.>

제4조(전문가 자격요건) ① 제3조의 전문가풀에 속하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계 :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
 2. 학계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경력
 - 가. 전문대 또는 대학교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 나.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 다.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산업계 7년 이상의 경력과 3년 이상의 강의 이력을 가진 자
 3. 언론계 : 언론 관련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4. 예산·재정 전문가 : 예산·재정 관련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5. 신생 분야, 해외 수상 실적, 산업계 기여 등 기타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 상 필요할 경우, 별표 1의 분야별 전문가 자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전문가풀 관리) 전담기관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전문가풀을 관리할 수 있다.

제 3 장 선정평가위원회

제6조(선정평가위원 선정) ① 선정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4.02.28.>

1. 소관부서는 외부위원의 전문분야 및 구성인원, 이해관계자 목록 등을 첨부한 선정평가 계획을 추출담당부서에 발송한다.
 2. 추출담당부서는 전문가풀에서 제1호의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후보군을 추출하여 해당 결과를 소관부서에 발송한다. 이 경우 추출담당부서는 추출 과정을 화면 또는 동영상으로 저장하여 보관한다.
 3. 소관부서는 추출 결과의 순번에 따라 참석 가능한 전문가를 선정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가풀과 무관하게 적격의 외부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2.28.>

1. 지원사업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위원 선정이 어려운 경우
 2.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해 별도의 선정평가위원 구성이 필요한 경우
 3. 전문가풀에서 적격의 선정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제4조를 준용하여야 하며, 3배수 이상의 외부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여 추출담당부서에 순번 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8.>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미만으로 후보군을 추출할 수 있다. <개정 2024.02.28.>
- ⑤ 선정평가위원 중 내부위원은 사업 목적과 특성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02.28.>

제7조(선정평가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은 제6조의 절차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최소 5인 이상)의 내·외부위원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선정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02.28.>

②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호선으로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4.02.28.>

제8조(선정평가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2.24.>

1. 「콘텐츠지원사업 전문가풀 관리 지침」 제10조에 따라 영구배제되거나 참여제한 중에 있는 자
2. 「콘텐츠지원사업 전문가풀 관리 지침」 제11조에 따라 임의 제한된 자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지원과제의 선정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평가대상인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자
2. 평가대상인 지원과제의 참여인력인 자
3. 평가대상인 지원과제의 과제책임자와 최종학위(석,박사) 지도교수관계

이거나 지도학생관계인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선정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③ 선정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처음부터 선정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선정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선정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선정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인원 중 1인을 간사로 정한다.

③ 간사는 선정평가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수 있다.

제10조(선정평가 방법) ① 전담기관은 평가대상(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이 공고 및 지원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선정평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1. 서면평가

2. 발표평가

3. 현장평가

③ 제2항 각 호의 평가별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5점 내외의 가산점을 정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선정평가 최종점수는 각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결권자를 상향하여 승인을 득하고 사전에 선정평가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⑥ 선정평가위원은 각 지원과제 및 신청인에 관하여 개별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⑦ 제6항의 경우 선정평가위원은 평가의견에 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 기간, 사업비 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선정평가위원회의 종합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제11조(선정평가 기준)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지원과제 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3. 총사업비와 수행기간 등 지원과제 관리체계의 적정성
4. 타 지원과제 및 간접보조사업과의 중복성
5. 신청인의 재무안정성, 자부담능력, 지원과제 수행능력
6.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공동과제수행의 경우)
7.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4 장 사업비조정 심의위원회

제12조(사업비조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내외의 외부위원으로 사업비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사업비조정 심의위원은 지원과제 심의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원과제의 선정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조정 심의위원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선정하는 경우 제6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비조정 심의위원 중 회계분야 전문가에 한하여 소관부서가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6.15.>

제13조(사업비조정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사업비조정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사업비조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인원 중 1인을 간사로 정한다.

③ 간사는 사업비조정 심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조정 심의 방법) ① 사업비조정 심의위원은 각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에 관하여 개별 심의의견을 작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비조정 심의의 종합 심의의견을 작성한다.

제15조(사업비조정 심의 기준) 사업비조정심의 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지원금 및 자부담금의 적정성
3.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5 장 결과평가위원회

제16조(결과평가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내·외부위원으로 결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결과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02.28.>

② 결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호선으로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4.02.28.>

③ 결과평가위원 전원은 지원과제 평가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원과제의 선정평가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0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과평가위원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선정하는 경우 제6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7조(결과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결과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결과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인원 중 1인을 간사로 정한다.

③ 간사는 결과평가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수 있다.

제18조(결과평가 방법) ① 결과평가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 평가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가산점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결과평가 최종점수는 각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결권자를 상향하여 승인을 득하고 사전에 결과평가위원회에 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평가 최종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 미만인 지원과제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⑥ 결과평가위원회는 각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에 관하여 개별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⑦ 위원장은 결과평가위원회의 종합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제19조(결과평가 기준) 결과평가 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지원과제 결과물의 완성도 및 활용성
3. 총사업비와 수행기간 등 지원과제 관리체계의 적정성
4.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6 장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제20조(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내·외부위원으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③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중 2분의 1 미만은 해당 지원과제의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외의 외부위원은 제6조와 제8조를 준용하

여 선정한다.

⑤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내부위원은 소관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21조(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인원 중 1인을 간사로 정한다.

③ 간사는 이의신청 심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심의 방법) ① 이의신청 심의는 서면심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이의신청의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심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인용(최종 합격)

2. 이의신청의 기각(최종 불합격)

3. 이의신청의 조건부 인용(단, 정해진 기한 내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최종 불합격)

③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다수결로 제2항의 결론을 도출한다. 심의결과 인용과 기각 의견이 동률일 경우 부결되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④ 이의신청 심의위원은 개별 심의의견을 작성한다.

⑤ 위원장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종합 심의의견을 작성한다.

제23조(이의신청 심의 기준) 이의신청 심의 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지원과제 결과물의 완성도 및 활용성

3. 지원과제 결과물의 기한 내 보완 가능성

4. 총사업비와 수행기간 등 지원과제 관리체계의 적정성

5. 신청인 진술 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6.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 장 심의위원회

제24조(심의위원회 기능) 전담기관은 지원과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5조제2항3호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내·외부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중 2분의 1 미만은 해당 지원과제의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외의 외부위원은 제6조와 제8조를 준용하여 선정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내부위원은 소관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2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인원 중 1인을 간사로 정한다.

③ 간사는 심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수 있다.

제27조(심의 방법·기준) ① 간사는 심의 시작 전 심의의 목적 및 필요성, 심의 기준, 심의 결과의 도출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② 심의는 서면심의 또는 현장심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심의의 이해관계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심의의 결과는 심의위원의 다수결로 도출한다. 필요시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에 따라 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28조(금지행위)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된다.

1. 평가 및 심의 중 알게 된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2. 공개되지 않은 평가 및 심의의 내용 및 결과를 누설하는 행위
 3. 평가 및 심의의 대상이 된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원과제에 관한 자문을 하거나 관련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행위
-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문가풀에서 제외하고, 필요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에 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보관) 전담기관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기록관 운영규칙」에서 정한 기간동안 보관한다.

제30조(수당지급) 전담기관은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에게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9.6.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관련 조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한다.

부 칙(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이전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18.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4.)

(심사평가위원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생략

②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콘텐츠지원사업 전문가풀 관리 지침」 제10조에 따라 영구배제되거나 참여제한 중에 있는 자”로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콘텐츠지원사업 전문가풀 관리 지침」 제11조에 따라 임의 제한된 자”로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분야별 전문가 자격

대분류		중분류	기본 자격
1	방송/ 영화	1 드라마 작가(웹드라마 포함)/PD	•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제작경력 10년 이상자 중 최근 3년 이내 작품 참여자 (기획, 제작, 투자, 제작총괄, 투자총괄, 기획 프로듀서, 프로듀서, 투자, 연출, 극본 크레딧 보유 등)
		2 다큐 작가/PD	
		3 예능 작가/PD/방송포맷	
		4 방송유통/배급	
		5 온라인 영상콘텐츠(1인방송) 기획/제작	• 방송영상콘텐츠 국내외 비즈니스 (해외공동제작 / 마케팅 / 라이선싱 등)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6 제작기술(편집,촬영,조명,음향)	
		7 방송시설구축(부조실, 스튜디오 등)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종합구성 PD & 작가(라디오 포함)	
		9 방송 협회/단체	• 산업계 및 협·단체 경력 10년 이상의 협·단체 현직 종사자
		10 영화 시나리오 작가	• 영화 기획개발, 제작경력 10년 이상자 중 최근 5년 이내 작품 참여자(기획, 제작, 연출, 작가, 투자/편성, 홍보, 마케팅 등)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1 영화 기획(감독)/제작	
		12 영화 홍보/마케팅	
2	게임	1 게임 기획/제작(프로듀싱, 디렉팅)	• 게임 콘텐츠 기획개발, 제작, 운영, 품질관리 관련 경력 10년 이상자 중 최근 3년 이내 게임제작에 직접 참여한 자(기획, 제작, 시나리오, QA, 마케팅 등/프리랜서 포함) 또는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게임 업계 현직 종사자(프리랜서 제외)
		2 게임 프로그래밍/인프라(보안, 빅데이터)	
		3 게임 아트/사운드	• 게임콘텐츠 국내외 비즈니스 (해외사업, 수출, 전시(게임쇼) 참여 등)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4 게임 운영/품질관리(OA)/현지화(LQA)	
		5 게임 사업/마케팅/퍼블리싱/투자	• 기자 경력 10년 이상자 중 현재 게임 콘텐츠 관련 담당자(현직 종사자) * 최근 기사자료 제출 필수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예시) 최근 3년 이내 콘진원 또는 게임 관련 분야 시상식에서 수상한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6 게임 홍보/언론/미디어/평론/인플루언서	
		7 게임 협회/단체	• 산업계 및 협·단체 경력 10년 이상의 협·단체 현직 종사자
		8 e-스포츠	• (e스포츠) e스포츠 대회 개최, 게임단 운영, 방송 제작, e스포츠 교육기관 운영, 게임방송 및 대회 플랫폼 운영 등 e스포츠 산업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만화/ 웹툰	1 만화 기획/제작	• 만화·웹툰 기획개발, 제작경력 10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

대분류		중분류		기본 자격
		2	만화/출판 작가(스토리 작가 포함)	(기획, 제작, 작가, IP 비즈니스 등)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만화 유통/배급/투자	
		4	만화 협회/단체	• 산업계 및 협·단체 경력 10년 이상의 협·단체 현직 종사자
		5	평론	•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애니	1	애니메이션 기획	•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제작 경력 10년 이상자 중 최근 3년 이내 작품 참여자 (기획, 제작, 시나리오, PD, 연출, 투자유치 등) • 애니메이션 국내외 비즈니스 (해외공동제작, 해외 마케팅, 라이선싱, 해외배급/유통 등)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 주요 애니메이션 방영 플랫폼사 (방송국, OTT 등)에서 최근 3년 이내 애니메이션 편성 경험이 있는 현직 종사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예시) 세계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공모전, 영화제 등 수상자
		2	애니메이션 제작	
		3	애니메이션 유통/배급/플랫폼	
		4	애니메이션/캐릭터 협회/단체	• 산업계 및 협·단체 경력 10년 이상의 협·단체 현직 종사자
5	캐릭터	1	캐릭터 기획	• 캐릭터 IP 기획개발, 제작 유통, 투자 경력 10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 국내외 비즈니스 (해외 판매, 라이선싱 에이전시 등)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예시) 경력 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캐릭터 IP의 시장 성과가 탁월한 자
		2	캐릭터 창작/디자인/상품기획/창작/디자인	
		3	캐릭터 라이선싱/에이전시	
		4	캐릭터 상품유통	
6	출판/e북	1	출판 기획/제작	• 출판 기획개발, 제작, 유통, 배급, 투자 등 경력 10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기획, 제작, 작가, IP 비즈니스 등)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출판 유통/배급/투자 (저작권 포함)	
		3	출판 협회/단체	• 산업계 및 협·단체 경력 10년 이상의 협·단체 현직 종사자
7	패션	1	패션 디자이너	• 패션 브랜드 디자인, 유통/MD, 컨설팅, 마케팅 등 경력 7년 이상자 중 관련 분야 현직 종사자 • 패션 브랜드 국내외 비즈니스 경력 5년
		2	패션 유통/MD	

대분류		중분류		기본 자격
		3	패션 컨설팅	이상의 현직 종사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패션 협회/단체	• 산업계 및 협·단체 경력 10년 이상의 협·단체 현직 종사자
8	음악/ 연예	1	음악 기획 제작	• 음악 기획 및 제작, 엔터테인먼트 사업, 창작, 실연 등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2	연예 기획 제작	• 음악 콘텐츠 제작/유통/배급 관련 기업 임원급 이상자 • 5년 이상 경력의 투자 전문가(VC, 기업 재직자 등)로서 음악 콘텐츠 분야 기업에 투자 경력 보유자
		3	유통/배급/플랫폼/투자 (저작권 포함)	• 뉴미디어/무대기술 관련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해당분야 담당자(재직자)로서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
		4	창작자/실연자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국내외 신기술융합 콘텐츠(VR, AR, XR, 음성인식 등) 관련 전시 및 프로젝트에 책임자급으로 3회 이상 참여한 자
		5	뉴미디어/무대기술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대중예술 협회/단체	• 산업계 및 협·단체 경력 10년 이상의 협·단체 현직 종사자
		7	평론	•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공연/ 전시	1	공연 기획 제작/연출 (음악감독, 안무가 포함)	• 공연 기획개발, 제작 경력 10년 이상자 중 최근 3년 이내 작품 참여자(기획, 제작, 연출, 작가, 투자/편성 등) • 뉴미디어/무대기술 관련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해당분야 담당자(재직자)로서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
		2	뉴미디어/무대기술	• 무대예술인자격증(무대기계, 조명, 음향) 2급 이상 보유자
		3	유통/배급/플랫폼/투자 (저작권 포함)	• 5년 이상 경력의 투자 전문가(VC, 기업 재직자 등)로서 공연 콘텐츠 분야 기업 투자 경력 보유자
		4	전시/행사 및 대행	• 전시 제작경력 10년 이상자 중 수주액 5억 이상의 단일 전시/행사 및 대행 경력이 있는 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0	뉴미디어 콘텐츠	1	실감형/메타버스 (VR, AR, MR, XR, 홀로그램, 디지털 트윈)	• 해당분야 연구, 개발, 기획, 제작, 뉴미디어 콘텐츠 투자 및 수출 등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프리랜서 포함)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NFT/블록체인	
		3	클라우드	

대분류		중분류		기본 자격
		4	AI(음성인식, 디지털 휴먼)	
		5	미디어아트(디지털 사이니지, 파사드)	
11	교육	1	학교교육(청소년)	- 교육분야 전문가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교육계 업무경력(강의, 연구) 10년 이상인 현직 종사자 - 취업, 창업분야 채용, 컨설팅 경력 10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학교교육(대학)	
		3	이러닝/에듀테인먼트	
		4	산업교육	
		5	취업	
12	창업지원/ 컨설팅	1	창업 컨설팅	5년 이상 경력의 VC(벤처캐피탈), AC(엑셀러레이터) 등 전문종사자(재직자)로 콘텐츠 관련 투자 경력 보유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엑셀러레이터	
		3	소셜벤처/임팩트투자	
13	금융/ 투융자	1	투자심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한(책임)형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 등)	- 콘텐츠분야 투자심사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현직 종사자 - 투자심사 담당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콘텐츠산업 분야 투자 경력이 있으면서 현재 금융권 유사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자 - 은행권 및 보증기관 등에서 콘텐츠분야 융자 또는 보증 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현직 종사자 - 은행권 및 보증기관 등에서 융자 또는 보증 심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콘텐츠산업 분야 융자 또는 보증 심사 경력이 있으면서 현재 금융권 유사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자 - 회계사, 창업컨설팅, 엑셀러레이터 종사자로서 콘텐츠 분야 컨설팅 경력이 5년 이상인 현직 종사자 - 회계사, 창업컨설팅, 엑셀러레이터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콘텐츠산업 관련 분야 컨설팅 경력이 있으면서 현재 유사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융자심사 (보증기관/은행 등)	
		3	금융컨설팅 (재무컨설팅/창업기업 가치평가/신용정보 등)	
14	마케팅	1	마케팅	- 기업, 기관 등에서 마케팅 경력 10년 이상자로서 현재 마케팅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종사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	언론/ 미디어	1	저널리스트	언론사, 기업 및 기관, 홍보대행사 등에서 해당 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자 중

대분류		중분류		기본 자격
	홍보	2	온라인 홍보	현직 종사자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관 홍보담당	
		4	포털광고	
16	정보통신	1	IT전략/컨설팅/ISP	(정보화전략/컨설팅/감리) 정보시스템 감리사, CISA, 기술사 등의 관련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또는 컨설팅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정보서비스 개발) 정보처리기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분석기사, OCP 등 DB 관련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정보보안) CISSP, CISA, 정보보안기사 등의 관련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서버/네트워크 설계 및 운영) 리눅스 마스터 등 서버 관련 자격 또는 네트워크 관련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보시스템/HW/DB	
		3	정보보안/네트워크	
17	법률/재무	1	변리사	- 자격증 취득 후 업무 경력 5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노무사	
		3	회계사	
		4	세무사	
		5	변호사	
18	학계/일반	1	방송영상	2년제 대학 이상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현직 교수 -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산업계 7년 이상의 경력과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진 현직 학계(학교, 연구소, 컨설팅, 조사업체 등) 종사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광고홍보학	
		3	영화	
		4	게임제작/산업	
		5	게임문화	
		6	만화	
		7	애니메이션	
		8	캐릭터	

대분류		중분류		기본 자격
		9	음악	
		10	공연	
		11	패션	
		12	문화콘텐츠	
		13	경영학	
		14	금융학	
		15	경제학	
		16	법학	
		17	통계 기획, 분석, 평가	
19	시설구축 관리	1	건축 기획	- 설계사무소 또는 해당 기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또는 기술사, 안전 지도사 - 설계(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 해당 기술 분야의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또는 특급기술자 - 안전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 건축 설계, 시공, 기술 및 안전 등 관련 분야 협·단체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종사자 2년제 대학 이상 관련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경력기간 5년 이상인 현직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건축 시공(공정관리)	
		3	기계 설비	
		4	전기 통신	
		5	안전관리(구조, 안전, 소방 포함)	
20	기타	1	성평등	- 중분류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중 현직 종사자 - 산업계 기여, 업적, 수상 등 기타 사유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관광	
		3	지역	
		4	현지화 (번역 등)	
		5	사회공헌	
		6	예산/재정/재무	

<별표 2> <개정 2011.3.15.> <개정 2012.4.17.> <개정 2015.4.27.> <개정 2016.2.19.> <개정 2018.2.9.>
 <개정 2018.6.12.> <개정 2018.8.6.> <개정 2018.10.29.> <조항이동 2023.3.27.>

평가(심의)수당 지급 기준

1.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업무를 수행한 위원 및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평가장에 참석한 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평가(심의)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직원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해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반경비 등을 고려하여 실소요액 기준으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1일 초과, 합숙, 재택 등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평가진행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위 : 원)

구분	지급금액	비고
평가(심의)수당	(100,000원/1시간) (최대 600,000원/1일 6시간 기준)	· 국외 : 실소요액 · 평가위원장 : 한도(1일 최대 600,000원) 외 100,000원의 초과수당 지급 · 미참여 평가위원 : 최소 100,000원 이상 예정액 한도 내에서 실참여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 ※ 나주 본원 평가의 경우, 이동거리와 교통비 지출에 대한 부담보전을 감안하여 조정지급
- 기본 120분 기준으로 40만원, 교통비 추가수당 10만원(광주, 호남권은 5만원)
 - 1일 상한액 60만원 한도 내(2시간 초과 시 30분당 5만원 한도 내 추가지급)